

제274회 강서구의의회 임시회
미래·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

강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재위탁 운영 동의안
검 토 보 고 서



2020. 9. 16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의회 미래·복지위원회

강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재위탁 운영 동의안

검 토 보 고 서

2020년 9월 16일
전문위원 정 우 숙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: 2020 - 78
- 나. 제 출 자: 강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: 2020년 8월 19일
- 라. 회부일자: 2020년 9월 9일

2. 제안이유

강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에 재위탁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7조 및 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사업개요

○ 시설개요

시설명	소재지	시설규모	종사자수
강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	강서구 공항대로561, 지하1층(염창동)	238㎡(72평)	16명

○ 위탁사무 내용

-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진단 및 기획
- 중증정신질환자 관리
- 알코올중독 관리 사업
- 정신건강증진사업(홍보, 교육, 자살예방, 아동·청소년)
-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활성화
- 정신보건사업 관련 지역사회 자원 인프라 강화에 관한 업무
-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○ 위탁기간: 5년(2021. 1. 1.~2025. 12. 31.)

○ 수탁자 선정방식: 공개모집 후 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

○ 소요예산(2020년도 기준): 838,492천원(국비3%, 시비47%, 구비 50%)

나. 추진일정

- 2020. 9월: 위탁업체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
- 2020. 10월: 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
- 2020. 11월: 수탁기관 평가심사
- 2020. 12월: 위탁계약 체결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
-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조
-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, 제6조, 제7조, 제10조, 부칙 제3조

5. 검토의견

- 본 동의안은 강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,
- 강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의 예방·치료, 중독관리 체계 구축 등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1997년 3월 설립되어 민간위탁으로 운영¹⁾하고 있으며, 2020년 12월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25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고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하고자 하려는 것임
- 검토결과,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는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조(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운영위탁) 및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(수탁 기관의 선정기준) 등의 기준에 따라 해당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의료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,
- 다만, 위탁체 선정에 있어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전문성, 업무의 수행능력, 관련업무 수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 구민들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·감독 및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1) 강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연혁(4P) 참조

□ 강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연혁

연번	구분	위탁기간	수탁기관	비고
1	-	1997.3.~2000.3.31.	연세의료원	· 1997.3. 최초위탁(가양7복지관 內) · 1998.3. 강서구보건소 지하층으로 이전
2	2회	2000.4.1.~2000.12.31. 2001.1.30.~2001.12.31.	김병후정신과	· 1년 단위 계약, 서울시와 협약체결
3	6회	2002.2.19. ~ 2007.12.31.	사는기쁨정신과	· 1년 단위 계약, 2004년까지 서울시 - 센터 협약 · 2005년부터 강서구청-정신보건센터 협약체결
4	재위탁	2008.1.1.~2008.12.31.	명지의료재단 (명지병원)	· 공개모집, 1년 위탁
		2009.1.1.~2011.12.31.		· 재계약 3년
		2012.1.1.~2014.12.31.		· 공개모집, 3년 위탁
		2015.1.1.~2017.12.31.		· 공개모집, 3년 위탁
		2018.1.1.~2020.12.31.		· 재계약 3년 (2017.9.29. 구의회 재위탁 보고)

□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

15조(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의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·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보건소(이하 "보건소"라 한다)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④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경우에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제39조에 따른 보호의무자(이하 "보호의무자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.

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·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.

⑦ 시·도지사는 소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시·도지사를 통하여 소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각각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⑧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·

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제8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10조(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운영위탁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정신건강증진시설

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

3.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·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·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·단체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 기준·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

④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, 사업집행현황,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명세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□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여성·청소년·아동·가족 복지를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
2. 노인·장애인 복지를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
3. 보건·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
4. 교통, 주차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
5. 문화·예술·영상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
6. 노동자복지, 자활, 취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
7. 교육·교양·체육·공원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
8.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
제7조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사무는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③ 1년 단위 이하로 계약하는 연례 반복적 사무는 제1항과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한다.

제10조(수탁기관의 선정기준)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.

1.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·기구·장비·시설 및 기술 보유 정도
2. 재정 부담능력 및 책임능력, 공신력
3.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

4.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연관성

5.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

부칙 제3조(승인 및 동의 절차의 특례)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자치 사무의 경우 제7조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